

#### **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사례(20년 10월)**

2020. 10 / 저작권상담팀(☎ 1800-5455)



(단어의 크기가 출수록 월가 질의가 많이 온 것을 의미함)

- (월간 워드 클라우드)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서 한 달 동안 상담한 내용 중 가장 많이 이용된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 100개를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 추출하여 시각적으로 이미지화
  - (월간 주요 상담사례) 월간 워드 클라우드 중 1위부터 5위까지의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(저작물 종류별 및 기타 핵심단어 각 5개, 총 10개)와 관련한 저작권 상담사례를 요약 정리

순위	저작물 종류별	기타
1	영상	이용
2	사진	등록
3	폰트	제작
4	캐릭터	유튜브
5	이미지	계약

\* 공유마당(<https://gongu.copyright.or.kr/>)의 박재갑, 김민 ‘한글재민체’ 글꼴로 작성

## < 저작물 종류별 주요 상담 >

- (영상) 회사의 제품이 TV 예능프로그램에 노출되었는데, 해당 장면을 광고에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?
  -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에게 허락을 얻어야 한다.<sup>1)</sup> 회사의 제품이 노출되었더라도 타인이 제작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상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얻어야 한다.
- (사진) 기관에서 축제를 기획하였고, 시민들이 축제 사진을 촬영하였다. 해당 축제 사진에 대한 저작자는 축제를 기획한 기관이 되는가 아니면 사진을 촬영한 개인이 되는가?
  -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<sup>2)</sup>이기에 사진을 촬영한 사람이 저작자가 될 것이며, 단지 축제를 기획하였다는 것으로 사진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.
- (폰트) 마음에 드는 글자체를 발견하여 자필로 쓴 후 이용하였다. 이에 대해 법무법인으로부터 폰트 파일 저작권 침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문제가 되는가?
  - 저작권법은 폰트 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호할 뿐 글자체(폰트 도안)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. 따라서 폰트 파일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필로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.<sup>3)</sup>
- (캐릭터) 캐릭터 상품을 구매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이 가

1) 저작권법 제46조

2) 저작권법 제2조 제2호

3) 특정 블로그에서 OO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글자를 발견하고, 그 글자 이미지를 캡처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이를스캔하여 그림 파일로 저장하고,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필요한 글자의 외곽선에 점을 찍은 작업(서체 아웃라인 패스 작업)을 거친 다음 그 점들을 이어 선이 생기게 하여 글자를 완성한 후 포장지에 사용한 행위는 OO서체 프로그램 자체를 '다운로드'하여 그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방식의 디자인 행위는 프로그램을 '복제'한다거나 '개작'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(서울동부지방법원 2013. 1. 18. 선고 2012고정494, 2012고단1923(병합) 판결 참조).

## 능한가?

- 저작재산권자에게 허락을 얻고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물품은 배포권<sup>4)</sup>이 소멸한다.<sup>5)</sup> 따라서 정당하게 만들어진 물품을 구입한 후 재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.
- 다만, 저작권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고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기에 주의하여야 한다.<sup>6)</sup>

## ○ (이미지) 권리자를 알 수 없는 이미지를 상품 제작에 이용하고자 한다.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?

-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얻는 것이 원칙이나<sup>7)</sup>,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정허락제도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다.<sup>8)9)</sup>

## < 기타 주요 상담 >

## ○ (이용) 보호기간이 만료된 음악을 직접 연주하여 영상제작에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?

-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후 70년까지이다.<sup>10)</sup> 보호기간이 지나면 저작권은 소멸하기에 직접 연주하여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.

## ○ (등록) 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저작권이 발생하는가?

- 저작권의 발생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등록, 납본, 기탁

4) 저작권법 제2조 제23호 "배포"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.

5) 저작권법 제20조.

6)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제2호.

7) 저작권법 제46조.

8) 저작권법 제50조.

9) 위원회 누리집의 법정허락. <https://www.copyright.or.kr/business/legal-license/index.do>

10) 저작권법 제39조.

등 일체의 절차나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.<sup>11)</sup> 따라서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한 순간부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다.

- 다만, 창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저작권 등록을 하면 저작자로 추정을 받는 등의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여 권리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.<sup>12)</sup>

### ○ (제작) 외주업체에 제작을 의뢰한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는가?

-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<sup>13)</sup>를 의미하기에 단순히 제작을 의뢰한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고, 저작물을 제작한 외주업체만 저작자가 될 것이다.
- 다만, 저작재산권은 일부 또는 전부 양도가 가능하기에<sup>14)</sup> 외주업체와 계약을 통해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것은 가능하다.

### ○ (유튜브) 코로나19로 전시회를 열기가 어려워 전시장을 촬영한 영상을 제작한 후 유튜브, 누리집 등에 업로드하려 한다. 작품의 저작권자에게는 전시에 대한 허락만 얻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가?

-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의 복제가 발생하며, 이를 유튜브, 누리집 등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것은 전송에 해당한다. 따라서, 저작권자에게 복제, 전송에 대해 별도로 허락을 얻어야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.

### ○ (계약) 예전에 출판사와 계약하여 책을 출판하였다. 현재 출판사와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다른데 계약서 검토가 가능한가?

- 위원회의 공정거래지원팀에서 저작권 계약서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(☎ 1800-5455 누른 후, 4번).

11)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.

12) 저작권등록사이트, <https://www.cros.or.kr>

13) 저작권법 제2조 제2호.

14)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.

※ 공유마당(<https://gongu.copyright.or.kr/>)의 (주)중고나라 '중나종체' 글꼴로 작성



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 사례(20년 10월)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